



금융과 통신간 연계강화 흐름과 향후 과제

2014. 12. 16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목 차

I. 논의 배경

II. 금융과 통신의 연계강화 흐름

II-1. 해외 트렌드

II-1. 국내 흐름

III. 시사점 및 향후 과제





I. 논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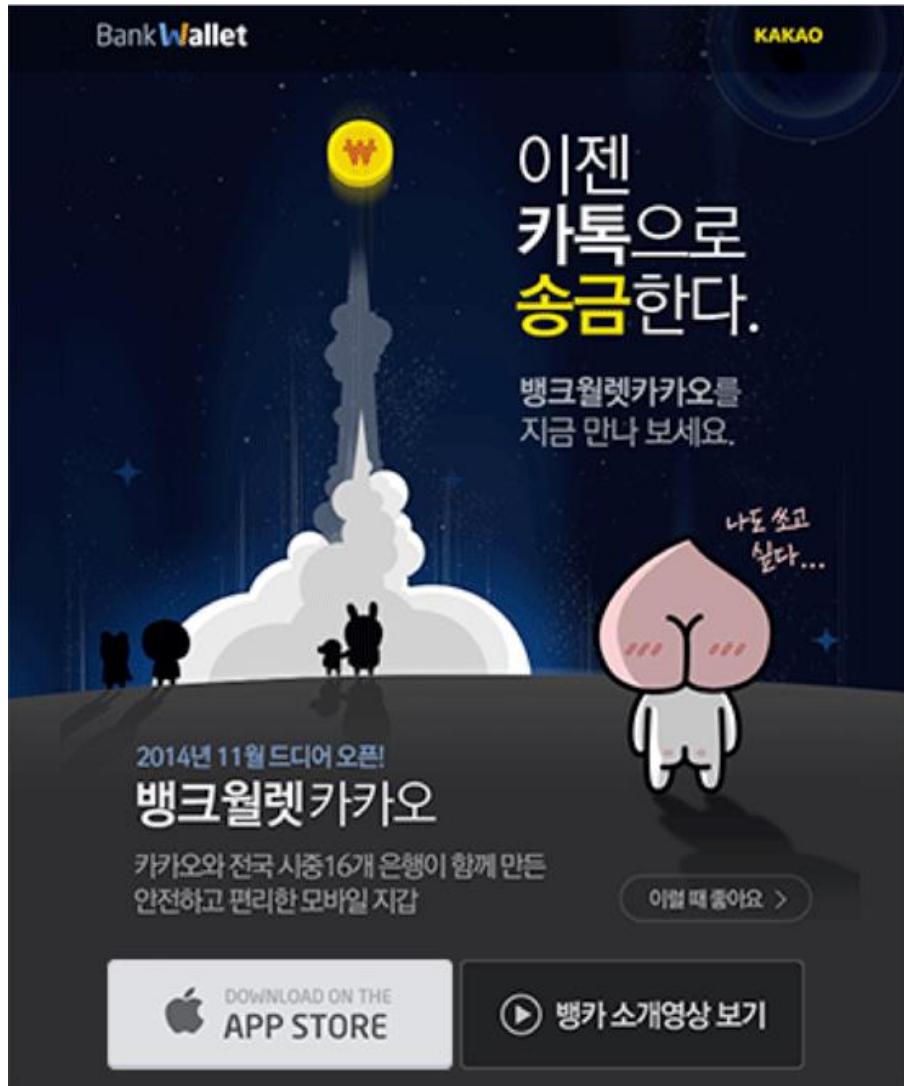
금융과 통신간 융·복합(?) 아니면 연계(?)

“금융결제원과 국내 16개은행*은
(주)다음카카오와 공동으로 SNS기반
모바일지갑인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제공..”

* 뱅크머니의 경우 특정은행 1개 계좌를
연계하여 등록

[2014. 11. 11 금융결제원 보도자료]

- 금융과 통신간 융복합은 fusion이
나 convergence 아니라
multidisciplinary (학제간 협업)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과 통신은 성격과 규제당국이
엄연히 다른 업종





II. 금융과 통신의 연계강화

II-1. 해외 트렌드



미국 - 모바일지급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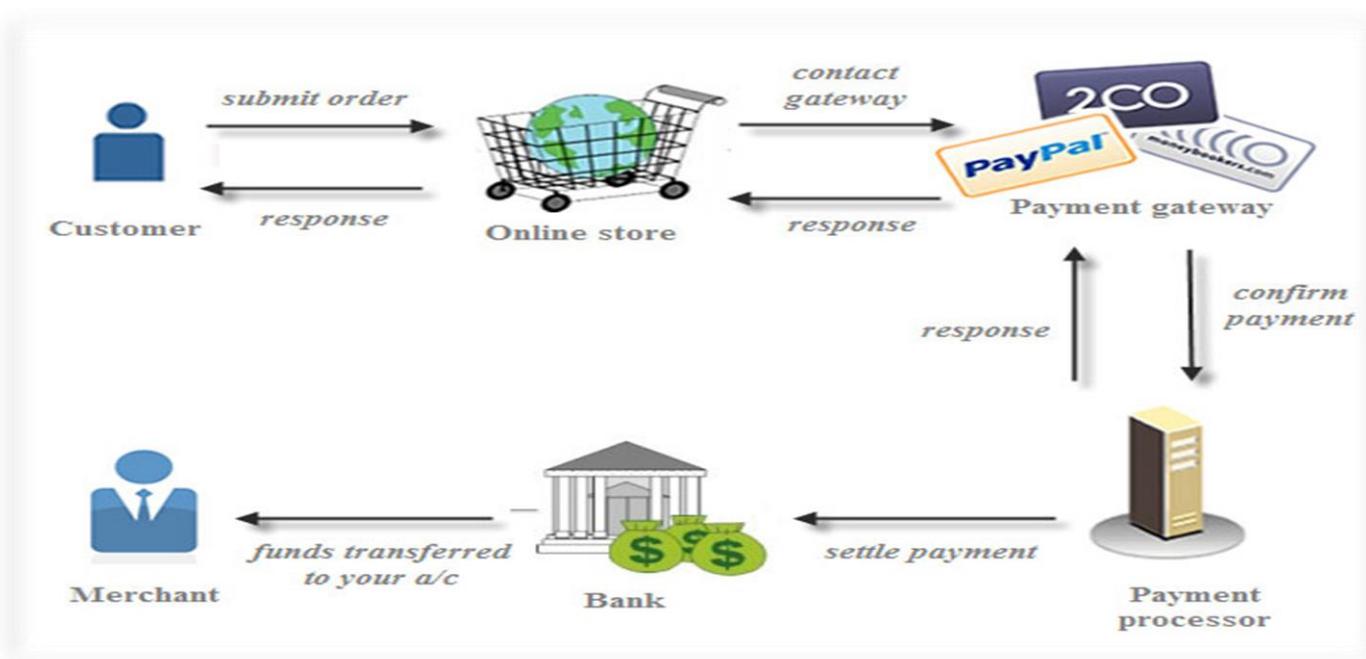


◆ 다양한(diverse) 사업자가 공존하는 분열(fragmented)되어 있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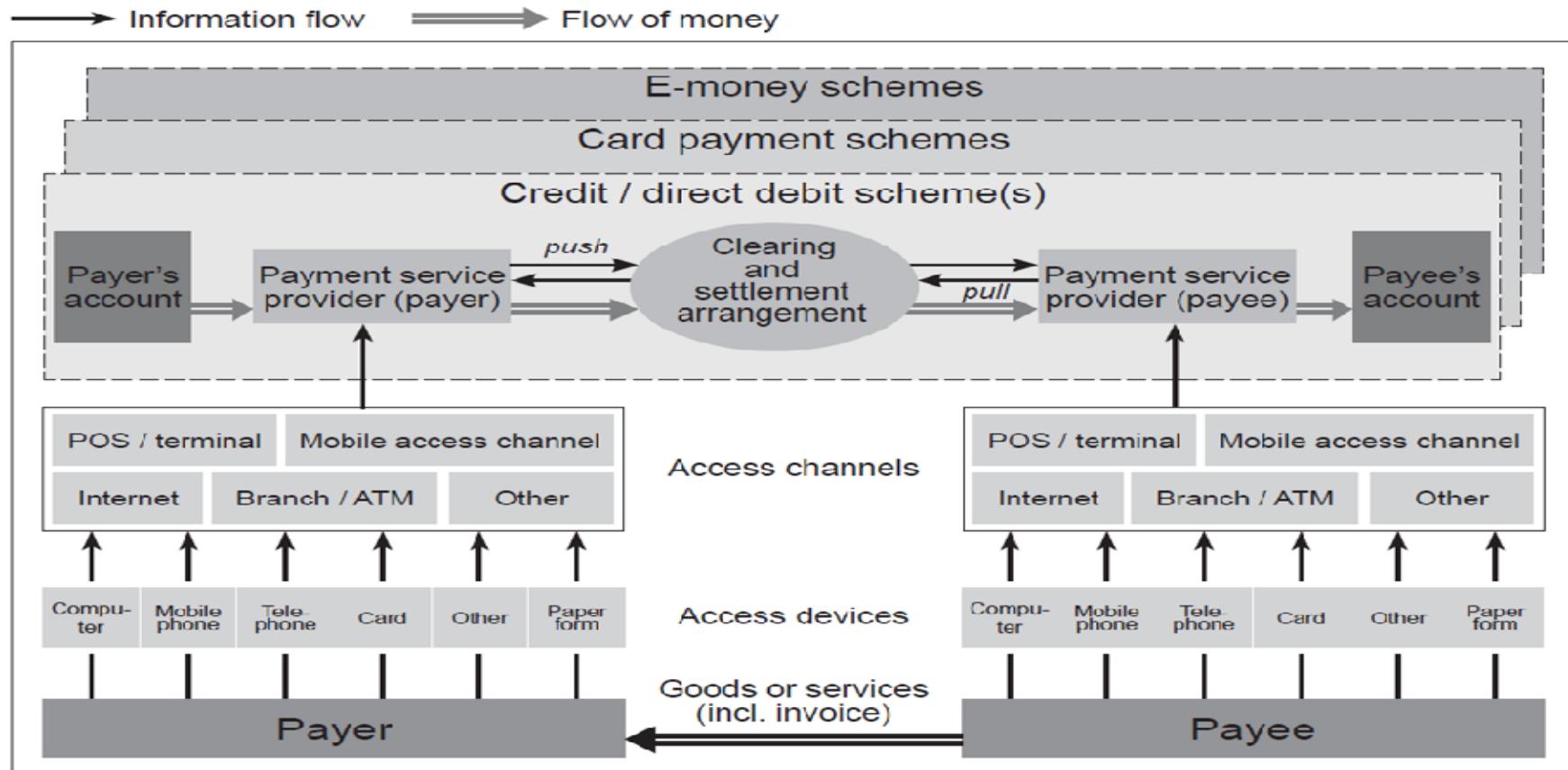


자료: FRB of Boston (2013.12)

12



- ◆ 금융과 IT의 연계에 따라 거래구조가 복잡해졌을 뿐 기존의 지급수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자료: BIS(2012)



- ◆ Money Service Business는 다음의 행위 중 하나 이상을 사업적 목적에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을 지칭 (*Includes any person doing business, whether or not on a regular basis or as an organized business concern,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apacities*) (31 CFR1010.100[ff])
 - Currency dealer or exchanger
 - Check casher
 - Issuer of traveler' s checks, money orders or stored value
 - Seller or redeemer of traveler' s checks, money orders or stored value
 - Money transmitter
 - U. S. Postal Service
- ◆ 자금이체(money transmitter)를 제외하고 각 행위 당 하루 1인(per person per day) 1,000불 이상을 행할 경우에만 MSB로 인정
- ◆ 단, 은행(31 CFR1010.100[d]), SEC 혹은 CFTC 등록 · 규제 · 검사를 받는 개인은 MSB에서 제외
- ◆ 규제 목적상 MSB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으로 구분(31 CFR1010.100[t])



◆ 원칙적으로 모든 MSB는 Department of Treasury에 등록해야 함

- 등록은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BSA(Bank Secrecy Act) E-Filing System을 통해 가능
- 즉, MSB는 자금세탁방지 의무(AML)를 지님

◆ MSB는 주법에 따라 주 정부 감독당국(state banking department)의 인가를 받아야 함

- MSB 인가는 Check Casher, Money Transmitter의 두 종류로 나뉘어서 행해지거나, Money Transmitter로 통칭하여 이루어지는 등 주마다 그 형태가 다름
 - 따라서 MSB, Money Transmission을 혼용(e.g. BSA)하기도 함
- 또한 인가 요건(licensing standards and requirements)은 주법에 따름



◆ 주(州) 정부 감독당국(state banking department)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 요건(licensing standards and requirements)은 주법에 따름
- 대개의 경우 surety bond의 제공(최소 \$25,000에서 최대 \$100만 이상)과 최소 자본요건을 인가 조건으로 함.

◆ 따라서 자금이체업자의 주(primary) 감독기관은 주정부 감독당국임

◆ 또한 Money Transmitter는 FinCEN을 통한 연방 등록이 요구됨

- 이는 Money Transmitter는 연방 차원의 감독도 받음을 의미
“payments services…most heavily regulated small businesses”

– Broox Peterson (formerly Senior Vice President and Assistant General Counsel at Visa International)



- ◆ New York과 California에서 인가 받은 자금이체업자 수는 2014년 9월 현재 172
- ◆ FinCEN에 등록된 자금이체업자 수는 38,859
 - 이 중 다수는 동일 소유권(common ownership) 혹은 동일 상표(common brand) 하의 복수 등록임.

대표적 자금이체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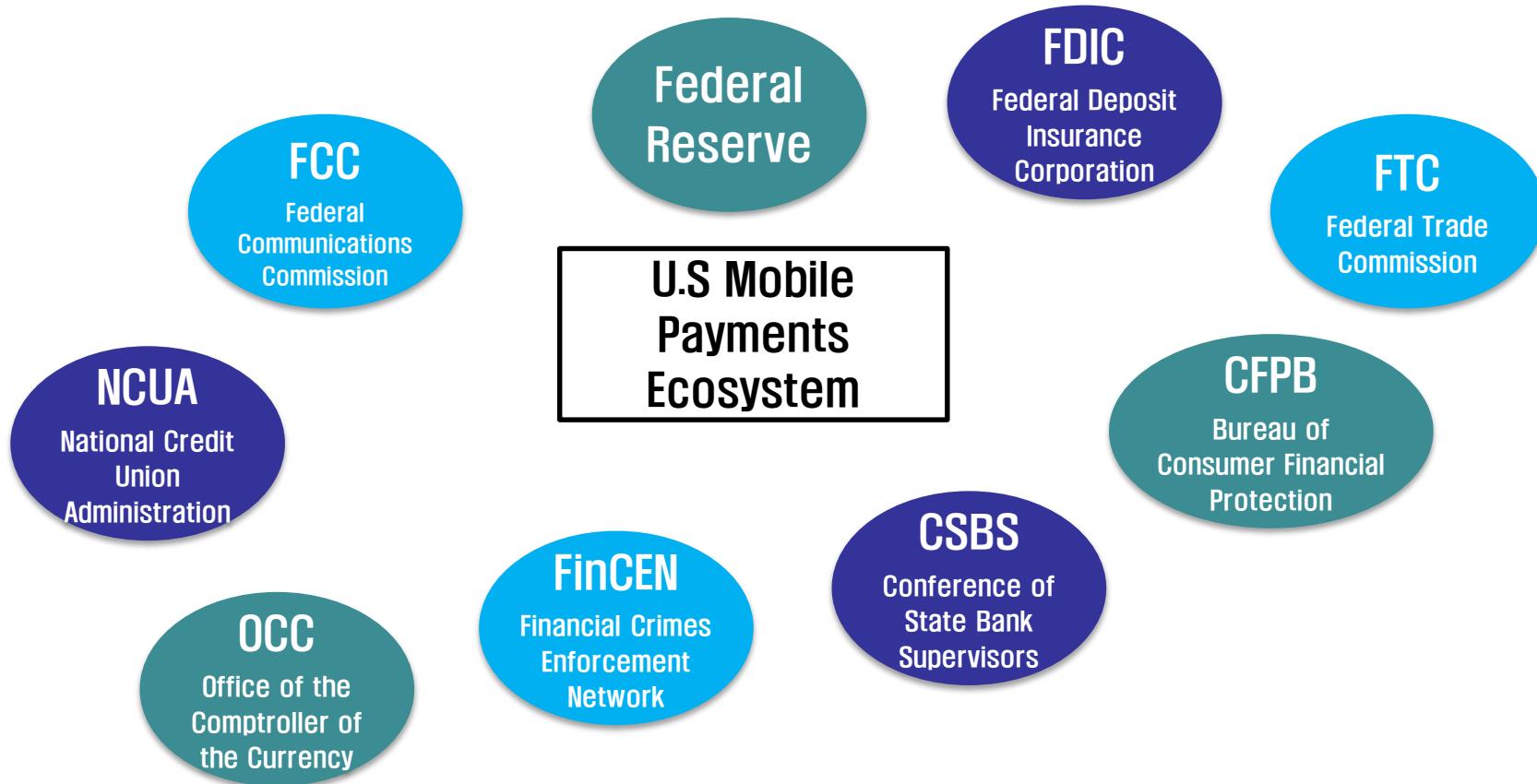
Square, Google Payment Corp., Amazon
American Express, First Data, Obopay, PayPal, Western Union

- ◆ 단, ApplePay는 MSB 미등록 상태임

“If the device maker does not accept and transmit value, and just transmits encrypted card information that is used by the regular payment system to process the payment among regular participants, it wouldn’t be a money transmitter” – U.S. Treasury

미국 - 모바일지급 규제 및 감독시스템

- ◆ 모바일지급 규제 및 감독은 여러 연방 및 주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짐
 - FCC 외 모두 금융 관계 감독 기관



자료: FRB of Boston (2014.9)

중국 - IT 금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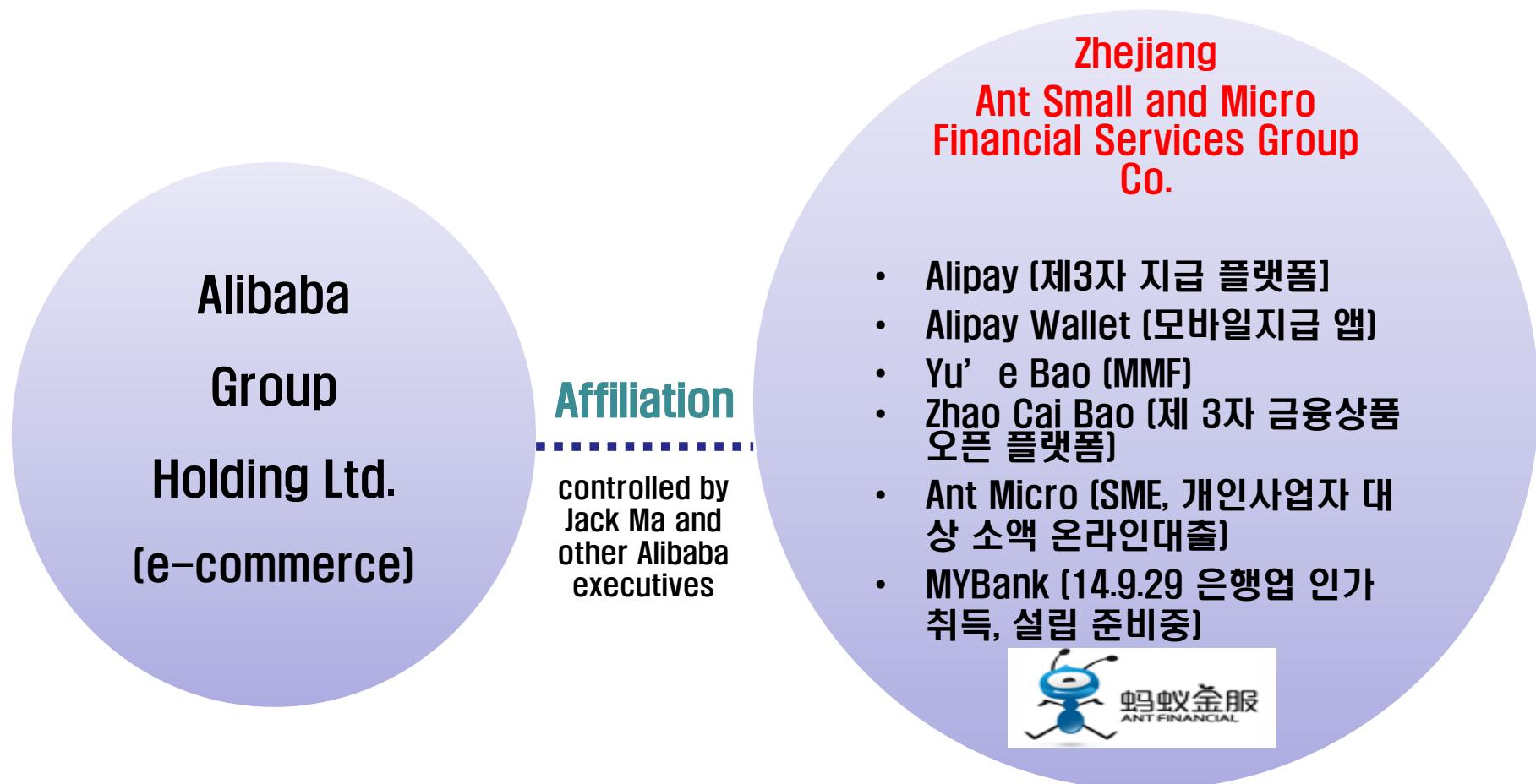


Company	Product/service	Brand name
Alibaba	Payments, settlement, remittances	Alipay
	Lending	Ali Microfinance
	Fund management	Yu' E Bao
	Insurance sales	Taobao wealth management
Alibaba, China Ping An Insurance&Tencent		Zhong An Online Property Insurance
Tencent	Payments	Tenpay
	Fund management	Wechat
Renrendai	P2P lending	
Demohour	Crowd funding	

자료 : Nomura Research Institute (20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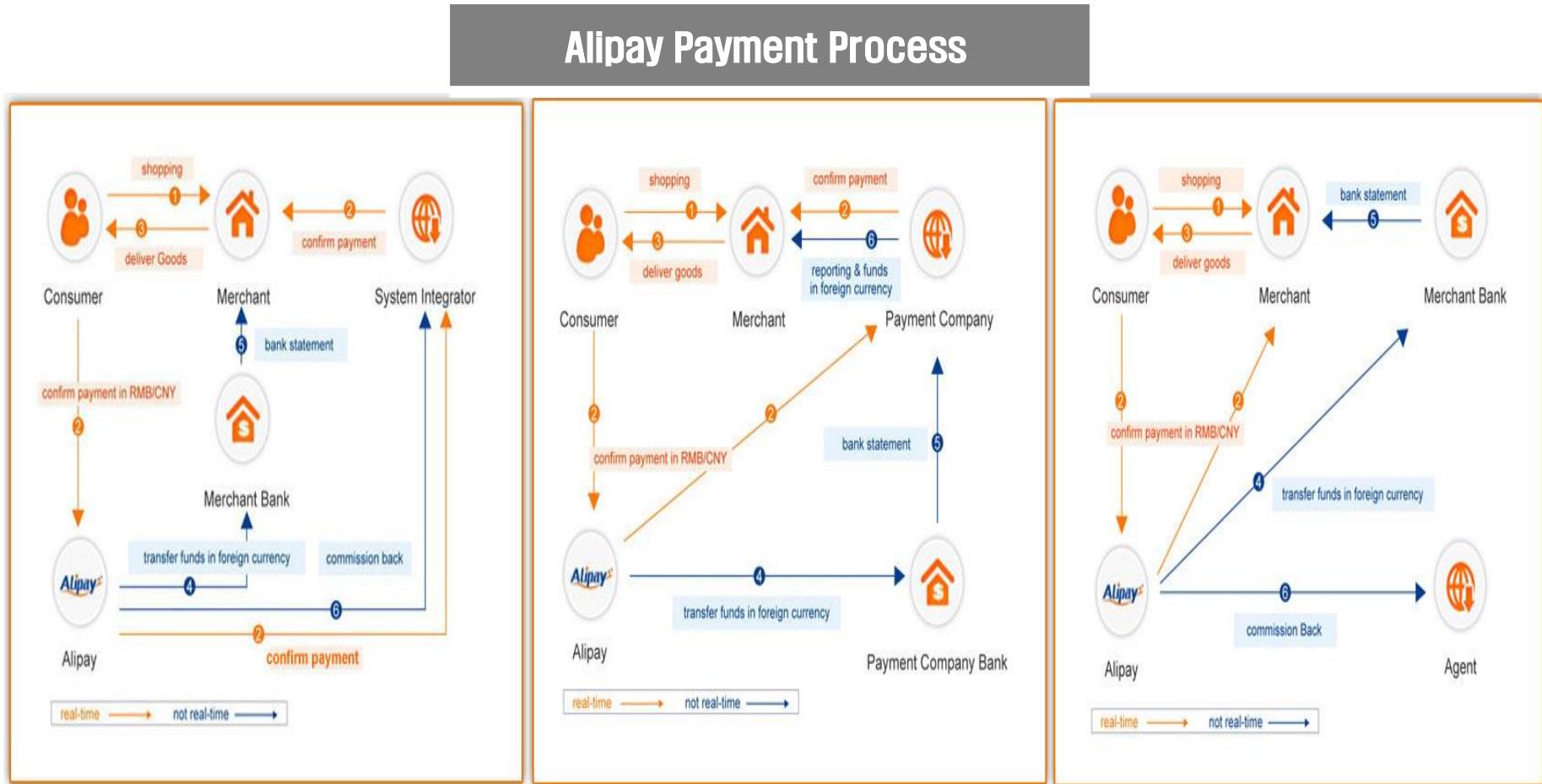
중국 – Alibaba (Ant Financial Group)

- ◆ 2011년 Alibaba는 Alipay 분할(spin-off)
- ◆ 2014년 10월 16일 Alipay는 기존 금융서비스를 통합(consolidate)한 후 명칭을 변경(rebrand)하였으며, 이후 Ant Financial Group이 설립됨



중국 - Alipay Working Process

- ◆ Alipay는 제3자 지급플랫폼으로 2013년 말 현재 30억 명의 사용자와 200개 이상의 협력(partnership) 금융기관을 보유





- ◆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People' s Bank of China에 따라 인가, 감독 등은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업 관리 규정(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Payment Services of Non-Financial Institutions)에 따름
- ◆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업은 비금융기관이 중개자로서 다음의 자금 이체서비스 (monetary funds transfer services) 부분 혹은 전체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
 - Online payment
 - Issuance and acceptance of prepaid cards
 - Bill collection via bankcards
 - Other payment services determined by the PBOC
- ◆ 비금융기관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서비스업인가(Payment Service Permit)을 받아야 함



- ◆ 인가는 People's Bank of China(PBOC)가 담당
- ◆ 인가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등록자본 요건을 만족하고, 지급서비스에 친숙한 최소 5명 이상의 경영 간부가 있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함
 - 최소 등록자본(registered capital) 요건은 서비스지역이 전국인 경우 RMB10 억, 특정 지역인 경우 RMB3,000억임
- ◆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업의 감독은 인가기관인 PBOC가 담당
 - 지급서비스업체는 지급서비스 통계보고서, 재무 및 회계보고서 등을 PBOC에 제출
 - PBOC는 업체의 누적손실이 자본의 50%이상인 경우, 중대한 영업상 위험이 있는 경우, 중대한 법률위반을 저지른 경우 지급서비스업 인가를 중지할 수 있음



II. 금융과 통신의 연계강화

II-2. 국내 흐름



금융과 통신의 연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PG사)

통신과 금융을
겸영(?)

금융과 통신간 연계는 전자금융업자가 주된 매개체



-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무를 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비금융기관을 **전자금융업자**로 분류
- ◆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전자금융보조업자**로 정의

전자금융업자 업종별 등록 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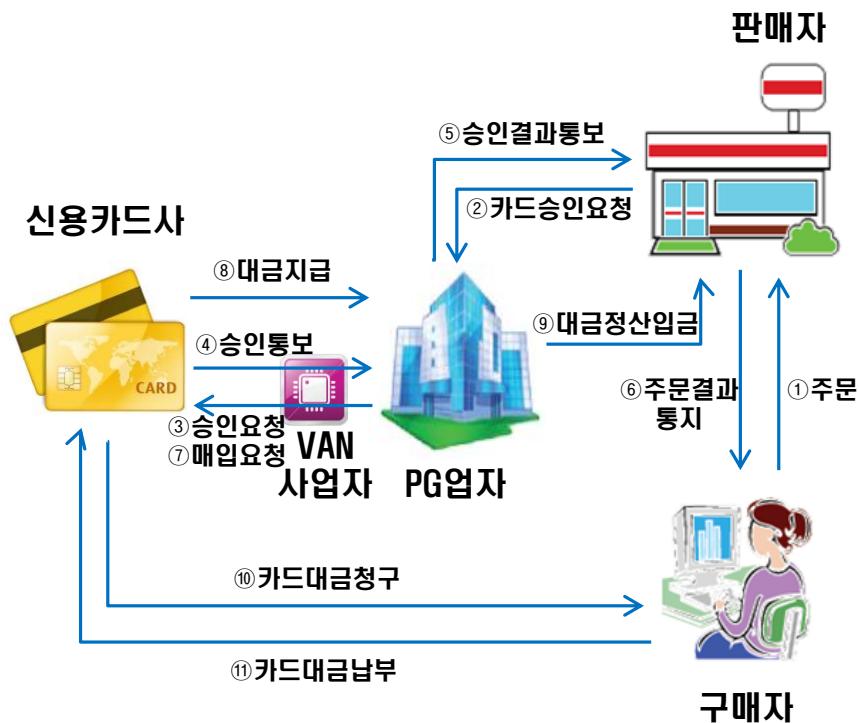
업 종	등록업체 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5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3
결제대금예치업	18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8
전자고지결제업	5
합 계	105개 업종 (61개 업체)

주 : 2014년 6월말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Payment Gateway)은 전자상거래업체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처리 절차 (신용카드 PG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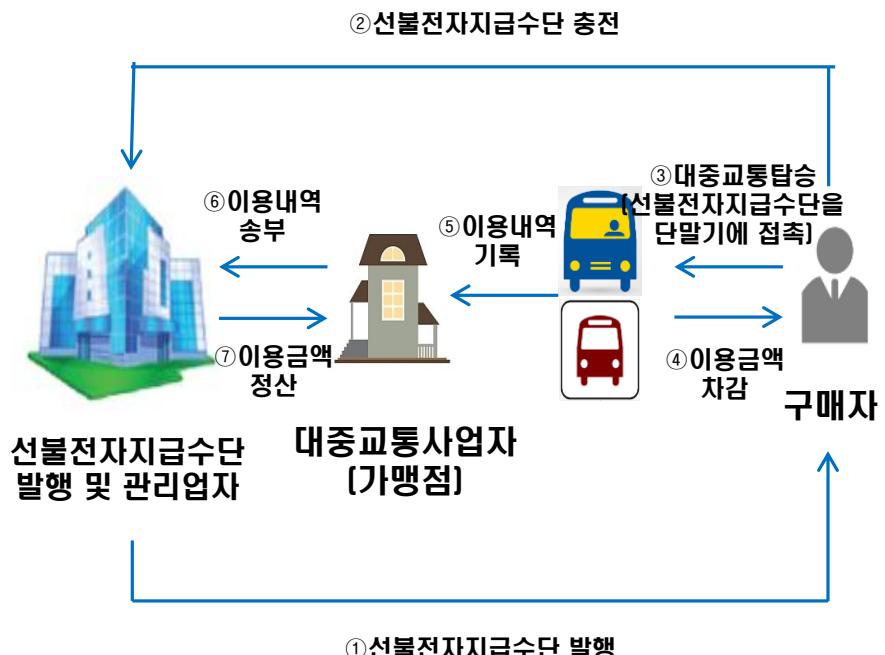
PG업자의 정보입수 경로 (신용카드 PG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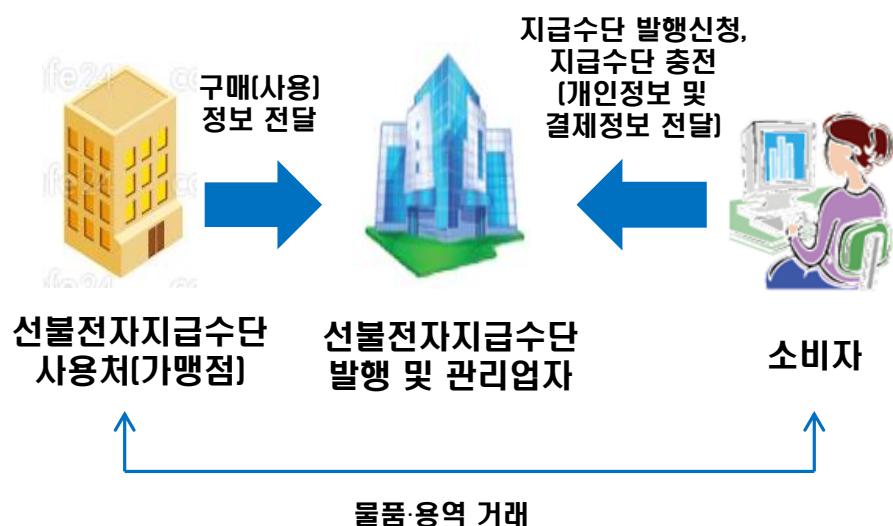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한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업무처리 절차 (무기명식 대중교통 탑승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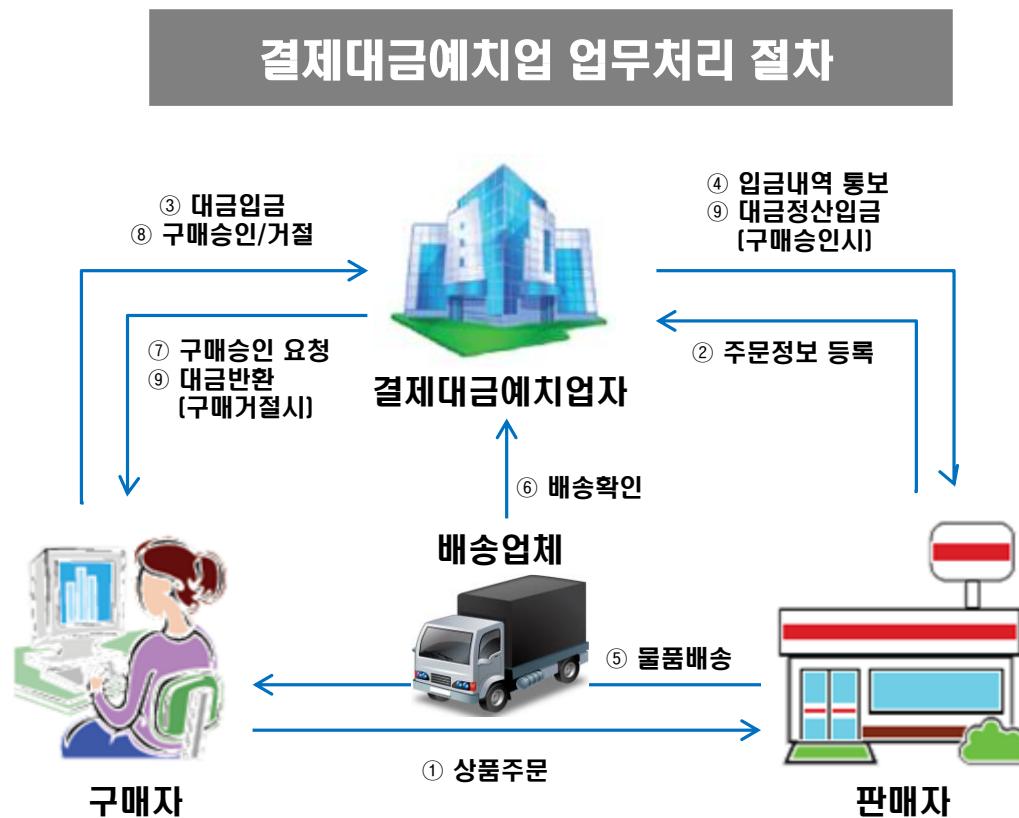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정보입수 경로 (기명식 기준)



결제대금예치업 (esc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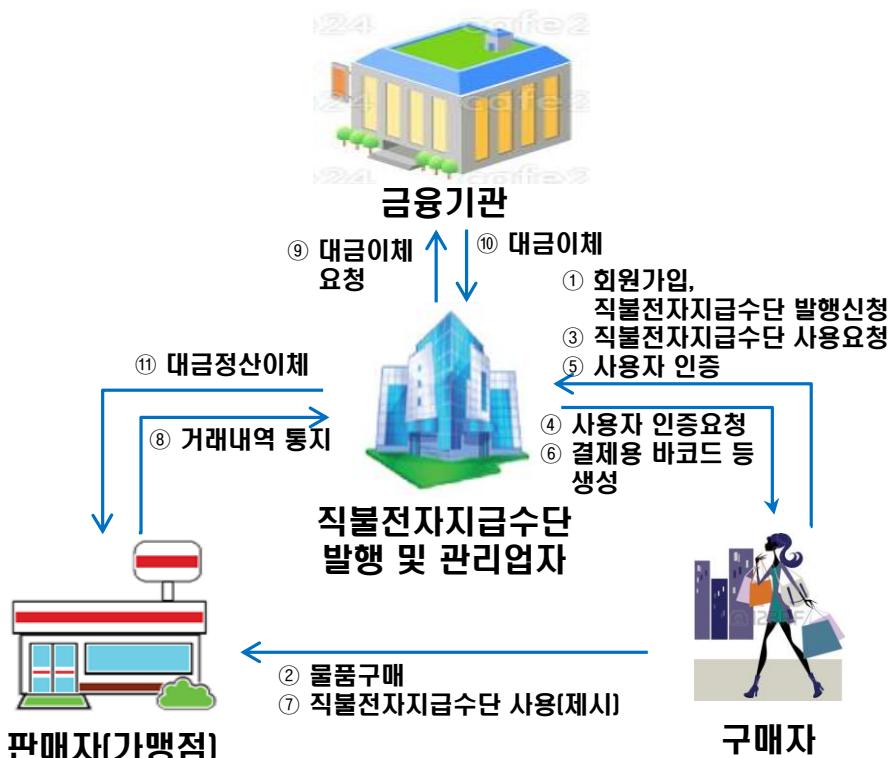
- ◆ 결제대금예치업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예치 받고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구매자의 금융 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이체되도록 중계하는 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업무처리 절차 (오프라인 사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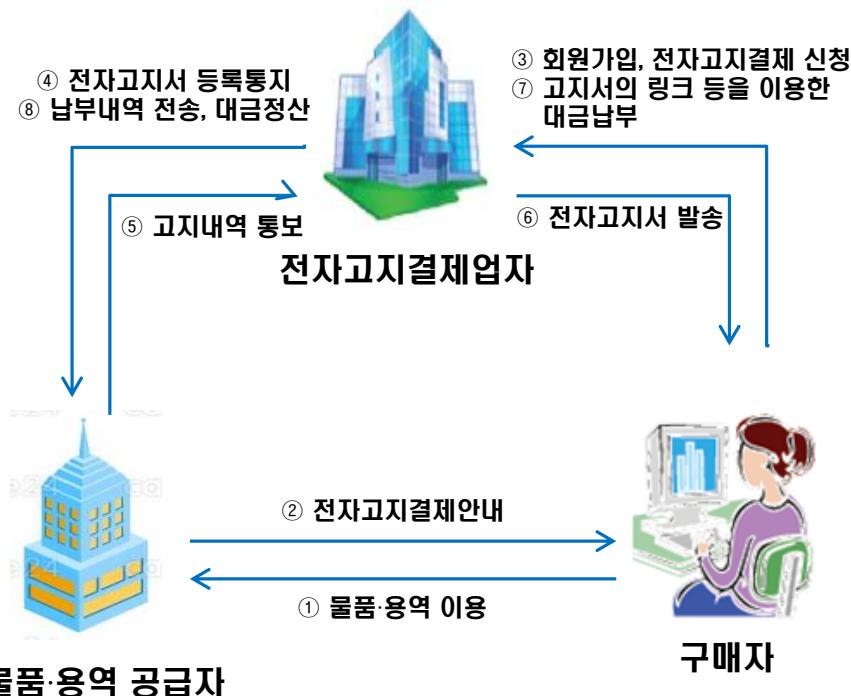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정보입수 경로



전자고지결제업

◆ 전자고지결제업은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와 같은 전자적인 수단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금을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전자고지결제업 업무처리 절차



전자고지결제업 정보입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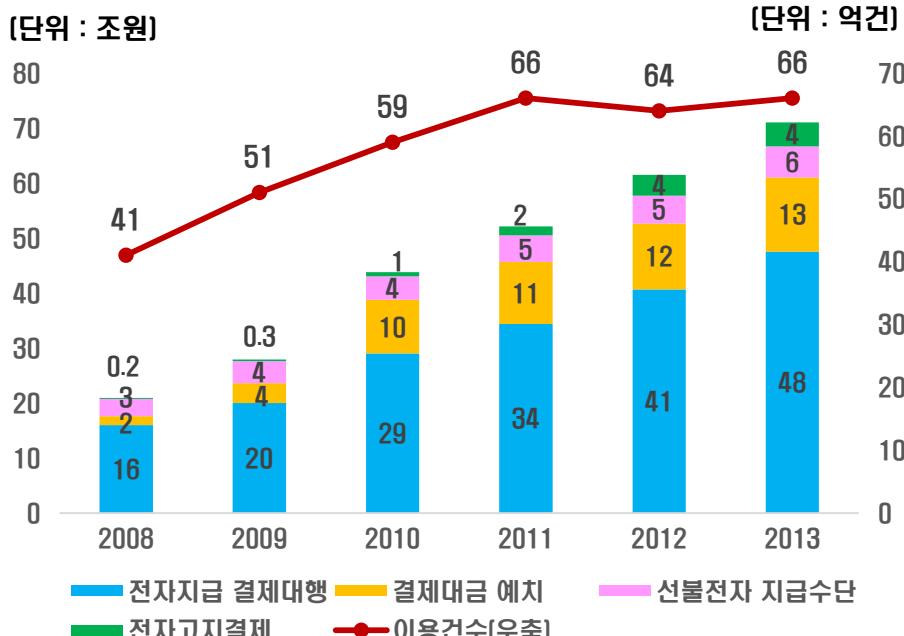
전자금융업자 중 PG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전자금융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실적은 2007년 17.4조원에서 2013년 71.1조원으로 증가하여 6년간 연평균 기준 26.4% 증가

➤ 업종별로 보면, 금액기준으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47.5조원)이, 건수기준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52.8억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실적 추이



2013년 전자금융업종별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백만건, 십억원, %)

	건수	금액
전자지급결제대행업	973.0 <14.7>	47,535.0 <66.9>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5,275.7 <79.8>	5,649.8 <8.0>
결제대금예치업	339.3 <5.1>	13,490.0 <19.0>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0.3 <0.0>	11.1 <0.0>
전자고지결제업	22.6 <0.3>	4,367.0 <6.1>
합 계	6,610.8 <100.0>	71,052.8 <100.0>

주 : <>는 전자금융업자 서비스 제공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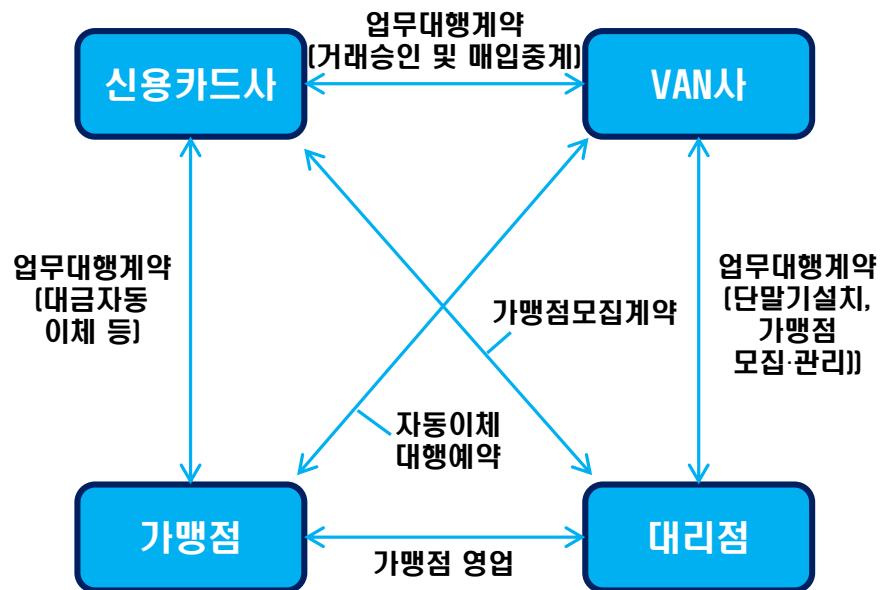
◆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자금융보조업자를 4가지 범위로 규정

- **신용카드 VAN**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은행 VAN**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 신용카드 VAN 사업자 (대표적 유형)

- ◆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거래승인을 위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카드 번호 등의 결제정보를 수집

신용카드 VAN사업자 업무구조



신용카드 VAN사업자 자본금 및 종업원수 현황 (2013년말 기준)

자본금 현황 [단위 : 업체 수]			
20억원 이하	20억~50억원 이하	50억~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	4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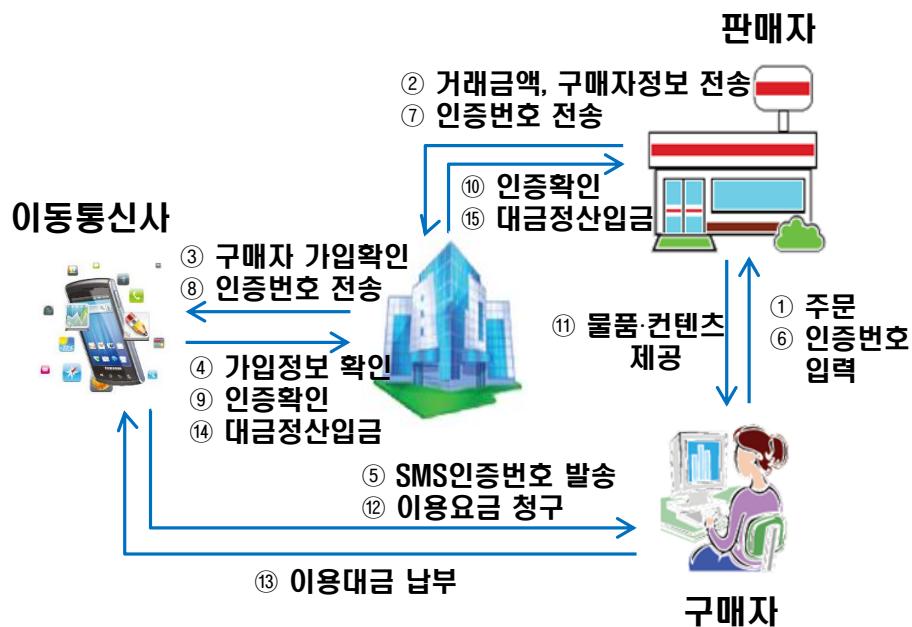
종업원수 분포 [단위 : 업체 수]			
50명 이하	50명~100명 이하	100명~500명 이하	500명 초과
1	6	6	2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 통신과금사업자

◆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적인 유형은 **통신과금사업자**

➤ 통신과금사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통신과금사업자 업무처리 절차 (무선전화 결제방식 기준)



통신과금사업자의 정보입수 경로





전자금융업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수행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
- 한국은행은 통계조사권 및 자료요구권을 통한 감시업무 수행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

전자금융보조업 (신용카드 VAN사업자)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음.
- 감독은 금융감독 당국에 의한 직접적 수행보다는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감독 형태임.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통신과금사업자)

- 정보통신망법에서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상세한 감독 규정은 없음.
- 통신과금사업자의 결제서비스 실적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통계조사권 등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되는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적인 감독 수행이 어려움.



III. 시사점 및 향후과제





- 금융과 통신간 연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외국의 전자금융업 규제가 우리에 비해 결코 완화적이지 않음.
(예: 미국의 MSB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우리의 전자금융거래업자는 미부과)



- 금융업과 통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지급결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규제를 적용할 필요
- 향후 외국 경쟁사의 진출에 대비해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시장 잠식에 대비해야 함. (카드사, VAN사, PG사 간 상생모델 구축)
- 보안성 심의제도 개선 필요, 공인인증서 이후 대체 결제방식의 합리성